

##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9. 5. 10  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  
위원장

###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제16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.

### 주요골자

- 출석일시 : '99. 5. 11 ~ 5. 12 (2일간)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·국·원장, 본부장, 증평출장소장 이상.